###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10

발의연월일: 2020. 9. 22.

발 의 자:김미애·하영제·이양수

이종배 · 김정재 · 전주혜

서정숙 · 조경태 · 전봉민

권성동・구자근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이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며 그 밖에도 장애아동에 제공되는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됨.

그뿐만 아니라 만 18세 일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장애인 대한 복지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연령에 따른 차별로 인해 우리헌법상 평등권과 교육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됨.

이에 장애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장애아동이 차

별받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 조제1호). 법률 제 호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u>18세</u> 미만의	1 <u>19세</u>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	<u>-</u>
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	
는 사람을 포함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